

#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시행세칙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시행세칙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세칙은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조종실기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 장 조종실기교수 승진임용

**제2조 (임용시기)** 년 2회(매년 3월1일, 9월1일)

**제3조 (임용방법)** ① 조종실기교수의 승진임용은 비행교육경력, 연구활동, 학생지도, 근무 성적 및 학교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.

② 승진임용 대상 조종실기교수의 제출서류는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제11조2호에 의하며, 조종실기교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용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4조 (임용기준)** ①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승진 소요기간 이내의 연구실적물과 비행경력(시간)을 합산하여 200%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 근무평정 결과가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취득한자를 임용대상자로 한다.

③ ICAO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이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

④ 본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 및 평가방법을 통한 비행기량 평가를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임용일 기준 1년 이내에 합격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 (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(%))**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호1과 같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1인 연구 또는 편찬      | : 10% |
| 2.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 | : 7%  |
| 3.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 | : 5%  |
| 4.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| : 3%  |
| 5. 석사학위 취득논문        | : 10% |
| 6. 박사학위 취득논문        | : 20% |

## 제 3 장 조종실기교수 기간제임용

**제6조 (임용시기)** 년 2회(매년 3월1일, 9월1일)

**제7조 (임용방법)** ① 조종실기교수의 기간제임용은 비행교육경력, 연구활동, 학생지도, 근무 성적 및 학교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.

② 기간제임용 대상 조종실기교수의 제출서류는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제11조2

항과 동일하며, 조종실기교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용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- 제8조 (임용기준)** ①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현직위 임용기간 이내의 연구 실적물과 비행경력(시간)을 합산하여 120%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② 근무평정 결과가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취득한자를 임용대상자로 한다.
- ③ ICAO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이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본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 및 평가방법을 통한 비행기량 평가를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임용일 기준 1년 이내에 합격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 (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(%))**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호1과 같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1인 연구 또는 편찬      | : 10% |
| 2.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 | : 7%  |
| 3.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 | : 5%  |
| 4.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| : 3%  |
| 5. 석사학위 취득논문        | : 10% |
| 6. 박사학위 취득논문        | : 20% |

## 제 4 장 연구실적물 및 비행경력

**제10조 (연구실적물 및 비행경력 인정기간)** 승진 또는 기간제임용 소요기간 이내의 연구 실적물과 비행경력(시간)만을 인정한다.

**제11조 (연구실적물 및 비행경력의 범위)** ①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.

1.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써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.
  2.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,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    - 저서(출판된 것에 한함)
    - 학회지
    - 논문집
    - 정기간행물
    - 학술연구 조성비 지급 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
    - 전문대학 교재편찬 위원회에서 집필된 교재
  3.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
- ② 비행경력(시간)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.
1. 비행경력(시간)은 조종실기교수로서 비행한 경력(시간)만을 인정한다.
  2. 승진 또는 기간제임용 소요기간 이내의 조종실기교수 비행시간만을 인정한다.
  3. 비행감독시간은 제외 한다.

**제12조 (연구실적물 및 비행경력(의 심사) ①**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1에 따른다.

1.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분야 3인 이상의 교원이 심사하되, 심사 대상자 직위 이상인 자를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 교원 또는 국가기관의 해당 전공분야 연구원(교원)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
  2. 석·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제도가 있는 공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수 있다.
  3. 연구실적물 심사평정은 각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A, B, C, D등급중 “C”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.
  4. 평가기준
    - A : 매우 우수하다
    - B : 우수하다
    - C : 보통이다
    - D : 불가하다
- ② 비행경력(심사)의 심사자료는 비행경력증명서로 하며 비행경력증명서의 비행시간은 조종실기교수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한다.

### 제 5 장 근무평정

**제13조 (근무평정) ①** 조종실기교수의 근무평정은 승진소요기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.

- ② 평정방법은 조종실기교수 인사규정 <별표 7> “조종실기교수 승진 및 기간제 임용 심사평정표”에 의거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평정한다.
- ③ 각 항목별 평정에 대한 반영비율과 평정 영역별 배점은 다음 각호1과 같다.
  1. 각 항목별 평정에 대한 반영비율

평정구분	평정	반영비율
1. 매우 우수하다	A	100%
2. 우수하다	B	80%
3. 보통이다	C	70%
4. 부족하다	D	60%

2. 평정 영역별 배점
  - 근무성적 : 50점
  - 학생지도 : 20점
  - 연구활동 : 10점
  - 봉사활동 : 10점
  - 발전기여도 : 5점
  - 기타 : 5점

## 제 6 장 영어능력 및 비행기량 평가

제14조 (영어능력 및 비행기량 평가) 승진임용 및 기간제임용시 임용기준에 적합한 영어능력 및 비행기량 평가는 다음 각1호에 따른다.

- ① 영어능력 : ICAO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이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 (단, 승진임용 및 기간제 임용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만 인정)
- ② 본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 및 평가방법에 의한 비행기량 평가를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임용일 기준 1년이내에 합격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## 제 7 장 승진임용 및 기간제임용의 제한

제15조 (승진 및 기간제임용의 제한)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및 기간제 임용이 될 수 없다.

- ① 징계의결 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기간중에 있는 경우
-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
  1. 정직 : 18월
  2. 감봉 : 12월
  3. 견책 : 6월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③항, 제8조③항, 제14조①항은 2010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.